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를 위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안)
[2018~2022]

관계부처 합동

순 서

I. 제5차 계획 추진 배경 및 경과	1
II. 장애인 정책 여건	3
III. 제4차 계획 평가	6
IV. 제5차 계획 기본방향	14
V. 분야별 추진과제	17
1. 지역사회 삶이 가능도록 복지·건강 서비스 지원체계 개편	17
2. 교육·문화·체육 형평성 제고를 위한 지원 체계 강화	27
3. 장애인도 더불어 잘 살기 위한 경제자립기반 강화	36
4. 다종적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의 권리 보장	42
5. 동등한 사회참여를 위한 기반 구축	51
VI. 추진체계	58

I. 제5차 계획 추진 배경 및 경과

1 추진 배경

□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법적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장애인정책종합계획)

제10조의2(장애인정책종합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권리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범정부 차원의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 지속 추진

- '96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추진 결정 ('96.12)
- '98년부터 5년마다 장애인 및 고용 관련 단체,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 각 부처가 협력하여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

구분	1차 ('98~'03)	2차 ('03~'07)	3차 ('08~'12)	4차 ('13~'17)
목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보장'	'장애인이 대등한 시민으로 통합적 사회실현'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한 참여확대와 통합사회 실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더불어 행복한 사회 실현'
세부과제	3대분야 71개 세부과제	7대분야 103개 세부과제	4대분야 58개 세부과제	4대분야 71개 세부과제
주요정책	장애범주 확대, 장애인 고용지원	장애인수당 확대, 장애인 무상보육, 문화바우처 도입	장애인연금 도입,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도입	장애인등급제 개편 및 맞춤형서비스 지원 체계 시범사업
참여부처	3개 부처	5개부처	12개 부처	12개 부처

□ 지난 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문재인 정부 국정철학을 반영한 장애인정책의 발전방향 정립 필요

- 장애인이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모두가 누리는 포용복지국가'라는 국정기조를 체감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장애인정책계획 수립 추진 필요

- 장애인 당사자 참여보장을 위해 장애계 주도의 연구용역 실시
 - 장애인단체가 중심이 되어 문헌조사, 현장 실무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제5차 종합계획 과제안* 도출 및 제안('17.1~5월)
 - * 장애등록체계 개선, 의사소통 지원, 탈시설 지원 등 70여개 세부과제 제안
-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및 실무추진단 구성 운영
 -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17.2~)
 - 장애인 관련 전문가, 장애인단체 실무자 등으로 6개 분과 구성, 제4차 계획 평가, 5차 계획의 정책방향 및 분야별 추진과제 등 논의('17.5~11월)
 - * 분과 : ① 복지서비스, ② 건강·체육, ③ 보육·교육, ④ 사회참여, ⑤ 경제활동, ⑥ 권익증진의 6개 분과위원회로 구성
 - 5차 계획 연구안에 대한 관계 부처 의견 수렴
 - 관계 부처 회의를 통한 의견 수렴 및 협조 요청('17.9월)
 - 분야별 과제안에 대한 부처 의견 조회 및 자문회의 실시('17.10~11월)
 - 제5차 계획 비전, 목표, 방향, 분야별 추진과제안 등 도출
 -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를 비전으로 6대 분야 27개 중점과제 제안
-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 수렴('17.12~'18.1월)
-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18.2월 예정)
-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 및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발표('18.3월초 예정)

II. 장애인 정책 여건

□ 장애인 규모는 유지되고 있으나 장애인구 구조 변화

- 장애인은 전체인구의 5%인 251만명 수준을 '10년부터 유지
- 고령화로 장애노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적 돌봄이 더 필요한 발달장애인('16년 22만명)이 매년 증가



□ 장애인 권리의식에 기반한 다양한 복지수요 급증

- 장애인이 국가 및 사회에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소득보장(41%), 의료보장(27.6%), 고용보장(9.2%), 주거보장(5.1%) 순('17. 장애인실태조사)
 - 특히 소득보장과 함께 의료보장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남
 - * 소득보장에 대한 욕구 : '11년(38.2%) → '14년(38.5%) → '17년(41.0%)
 - * 의료보장에 대한 욕구 : '11년(31.5%) → '14년(32.8%) → '17년(27.6%)
- 장애인의 14.4%는 일상생활에서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활동보조인 등 공적 돌봄서비스 제공*이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부족
 - * '16년말 활동보조서비스 이용 장애인은 67.5천명
- 장애인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의 3대 요구과제로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제 폐지, 탈 시설화*를 지속 요청
 - * 보건복지부 장관 광화문 농성장 방문시 농성장을 철수하며 정부에 요청한 사항

□ 주거 · 복지정책의 연계가 필요한 1인 가구 증가

- 장애인 1인 가구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 ('11. 17.4%→'14. 24.3%→'17. 26.4%)

* 전체가구 : '11. 24.5%→'14. 26.5%→'17. 28.5%

- 장애인이 있는 가구 형태는 2인(33.8%)→1인(26.4%)→3인(19.2%)→4인(12.1%) 가구 순

- 주거형태는 아파트 48.4%, 단독주택 39.9%, 다세대주택 8.4%, 연립주택 2.4% 순

- 이 중 월세가 19.6%, 전세 9.3%, 무상 8.8% 등 비자가 가구가 37.7%

□ 특수교육 대상자 지속 증가

- 장애인의 교육수준은 중졸 이하 58.5%, 고졸 29%, 대졸 이상 12.5% ('16)

* 전체인구 교육수준 : 중졸 이하 25.6%, 고졸 37.7%, 대졸 이상 36.7%

- 특수교육 대상자는 총 89천명으로 특수교육법 제정 이후 지속 증가 추세



□ 양극화, 저성장 흐름하에서 취약한 소득수준 및 낮은 경제활동

- 장애인 빈곤율(31.5%)은 전체국민(15.9%)의 2배 수준이며, 연평균 경상소득은 3,496만원으로 전체가구(4,882만원)의 71.6% 수준('15)

* '16. 가계금융·복지조사(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38.7%)은 전체인구(62.3%)의 60% 수준('17)

* 실업률 : (장애인) 5.7% (전체) 3.3%, 고용률 : (장애인) 36.5% (전체) 60.2%

- 고용된 장애인도 비정규직 비율*이 2배 높고, 임금 수준**도 상대적으로 열악

* 비정규직 비율 : (장애인) 59.4% (전체) 32.9%

** 임금근로자 월평균임금 : (장애인) 178만원 (전체) 242.3만원
(‘17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17. 경제활동인구조사)

□ 동등한 사회참여를 하기에는 제약 요인 여전히 상존

- 장애 때문에 본인이 차별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장애인이 34.8%, 장애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79.9%('17. 장애인실태조사)
 - 보험가입 거절 등 금융상품 이용시 차별경험도 73.9%('17. 금융위원회)
- 장애인을 위한 이동·정당한 편의제공도 아직 미흡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78.2%, 적정 설치율*은 68.6% ('13)
 - * 설치율은 편의시설 설치여부, 적정설치율은 필요한 편의시설을 모두 설치한 비율
 - 훨체어 이용 장애인이 이용하는 저상버스 보급률은 19%('16), 지역간 이동 대중교통 수단은 철도뿐임
- 문화·여가생활은 장애인의 96.6%가 TV시청이며, 여행·스포츠·문화예술 관람 등 문화·여가활동*은 9% 미만 ('17)
 - * 문화예술 관람 6.4%, 여행 등 관광활동 6.8%, 스포츠 8.5%

III. 제4차 계획 평가

1 추진 개요

- (주요과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비전으로 4대분야, 19대 중점과제 71개 세부과제 추진
- 우리나라 주도 '인천전략'(제3차 아태장애인 10년)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인천전략' 주요내용을 제4차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



- (이행점검) 계획 수립 후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전년도 이행사항, 연차별 계획을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하여 매년 점검
- 한국장애인개발원을 통하여 성과목표 달성을, 계획의 적절성, 추진과정의 효율성 등을 중간평가*('16)

* 일부 과제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우수하게 평가

- '13~'17년 5년간 장애인 지원 예산 큰 폭으로 증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법” 등 총 5개의 장애인 관련 신규 법률 제정
- 장애인연금, 일자리 지원 확대 등으로 장애인 빈곤율을 개선하고 활동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확대하여 장애인 복지 수준 제고

□ 장애인정책 예산의 지속적 확대

- 장애인 복지급여 수준 및 대상자 등의 전반적 확대로 '13~'17년간 장애인 지원 예산 37% 증가



□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더불어 행복한 사회 실현을 위한 새로운 법률 제정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14.4월, '15.11월 시행)
 - * 개별 장애유형 지원에 관한 최초의 법률제정으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발달장애인 권리보호를 위한 법적 토대 구축
- ‘장애인 ·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15.12월, '16.12월 시행)
 - *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15.12월, '17.12월 시행)
 - * 장애인 건강증진, 의료서비스 접근성 보장을 위해 장애인건강주치의,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제도 도입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한국수화언어법’ ('16.2월, 8월 시행), 점자법('16.5월, '17.5월 시행) 제정
 - * 수어 및 점자의 보급 · 발전 · 교육 및 수어통역 지원 등에 관한 사항 규정

① 장애인 복지·건강 분야

□ 장애등급제 폐지 및 장애인 건강관리 지원기반 마련

-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도록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활동지원법 등 개정('17)

*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 폐지법률 시행

- 3차에 걸친('15~'17)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등급을 대신하는 서비스 종합판정도구 및 맞춤형 전달체계 모형 마련

-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건강격차 해소 및 의료접근성 격차 해소를 위해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15)

* 장애인건강주치의제 도입, 장애인건강검진기관 지정, 재활의료기관 지정 등

□ 활동지원 대상자 확대 등 돌봄·사회참여를 위한 복지서비스 확대

-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장애1급에서 3급까지 확대하여 서비스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

-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및 장애아 가족양육지원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장애아동가족의 양육부담 경감

*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서비스 이용자 : 3,000명('13) → 3,725명('17)



□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기반 구축

- 중앙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17개)를 신설('16)하여 개인별 맞춤형 지원, 범죄 피해시 권리구제·보호서비스 제공기반 마련

*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 : 6억원('13) → 91억원('17)

2 장애인 교육·문화 분야

□ 특수학교(급) 확대, 특수교사 증원, 고등교육지원 확충 등 장애인 교육 여건 개선

○ 특수학교(학급)을 신·증설*하고,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 제고**

* 특수학교, 특수학급 현황: ('12) 156교, 6,598학급 → ('17) 174교, 10,325학급

**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 : ('12) 55.9% → ('17) 67.2%

○ 전공과* 확대 등을 통해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강화

* 전공과 : ('12) 111교, 364학급 → ('17) 154교, 608학급

**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 ('12) 30교 → ('17) 48교

○ 장애대학생 학습지원을 위해 학습도우미 지원*, 대체자료** 제공 확대

* 장애대학생 학습도우미 수: ('12) 2,494명 → ('17) 3,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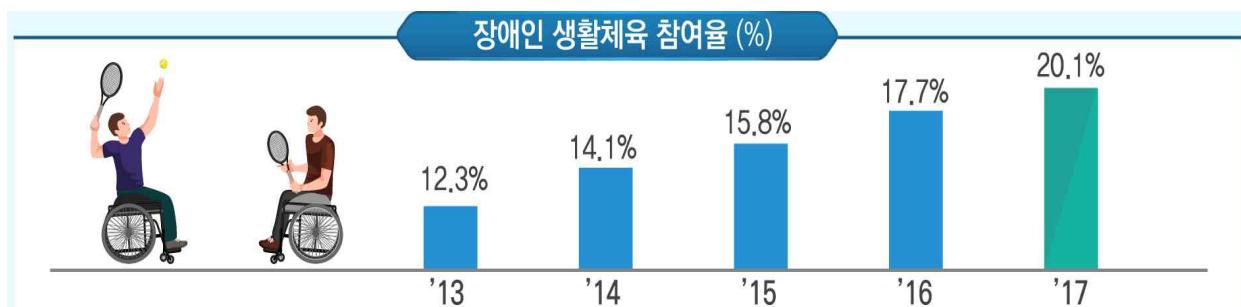
** 국립장애인도서관과 연계하여 시각장애 대학생 대학교재 제작·보급

□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지원 확대를 통한 장애인 참여율 향상

○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확대, 동호인 클럽 운영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 생활 체육 참여율 제고

○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 대상으로 미술·음악·연극 등 예술강사 지원 지속 확대* 및 서울 대학로에 장애인문화예술센터 '이음' 설립('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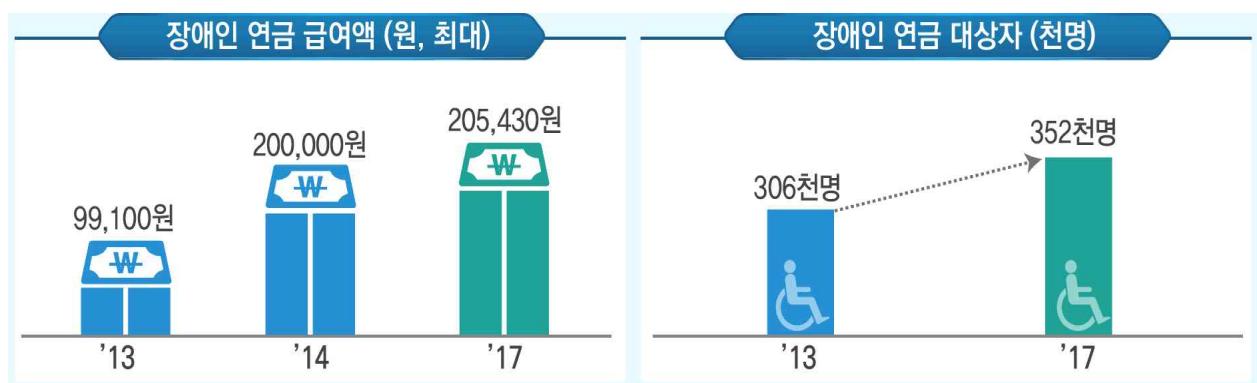
* ('13) 96개소 → ('15) 182개소 → ('17) 250개소



③ 장애인 경제활동 분야

□ 소득보장 및 일자리 지원강화로 장애인-비장애인간 소득 격차 개선

- 장애인 빈곤율이 개선*('12. 35.6%→'15. 31.5%)되고, 전체가구 대비 장애인 경상소득 수준도 향상('12. 64.0%→'12. 71.6%)
 - * 같은 기간 전체 빈곤율은 '12. 16.5%→'15. 15.9%로 소폭 감소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2배 수준 인상*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 중증 장애인의 63%에서 70%까지 확대('14)



□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조정을 통한 장애인 고용확대 및 복지일자리 확대

-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조정*으로 의무고용기관의 장애인 고용인원이 16.9만명('16)까지 확대
 - * 법정 의무고용률 : 공공 ('13) 3% → ('17) 3.2% / 민간 ('13) 25% → ('14) 27% → ('17) 29%
 - * 의무고용 기관의 장애인 고용률 : ('13) 2.48%(15.4만명) → ('16) 2.66%(16.9만명)
- 공공형 장애인 일자리 확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을 확충 등을 통해 장애인 취업 기회 확대
 - * 공공형 장애인 일자리 : ('13) 13,279명 → ('17) 17,352명 (30.7% ↑)
 -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 ('13) 379개소, 8,844명 고용 → ('16) 492개소, 10,095명 고용

④ 장애인 사회참여 및 권리증진 분야

□ 장애인 인권 및 권리보장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 및 학대피해장애인 쉼터 확충('17. 8개) 등을 통하여 장애인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 * 장애인권익옹호기관('17): 중앙 1개소, 지역 17개소 설치
- '정신보건법'을 전면 개정*하여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입·퇴원제도 개선, 정신질환자 복지지원 강화에 대한 근거 마련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
- 성폭력 피해 여성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 등을 위한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14), 성폭력상담소, 보호시설 등 인프라 확충
 - * 성폭력 피해 장애인 보호시설 9개소 운영('17)

□ 편의증진 관련 제도 강화를 통해 물리적 접근성 개선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 Barrier Free)의 법적 근거 마련('15) 및 국가나 지자체가 신축하는 건축물 BF인증 의무화 등으로 편의시설 설치 확대
 - *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 : 교통수단 '11년 76.9% → '16년 77.4%, 의료시설 '13년 66.1% → '16년 85.6%로 개선
- 교통수단의 경우 '16년 기준 특별교통수단 2,820대 도입하여 법정 보급률(1, 2급 장애인 200명당 1대) 달성

□ 장애인 정보 접근권 향상을 통해 비장애인과의 접근성 격차 개선

- 국가공인 웹접근성 품질인증제 도입, 웹접근성 국가기술표준 마련,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등을 통해 디지털정보화 수준* 개선
 - * 장애인 디지털정보화 수준 : ('15) 62.5% → ('17) 65.4% → ('17) 70% (일반국민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을 100으로 둔 상대적 수준)

□ 장애인 정책분야별 기본틀은 완비되었으나 부처별 추진정책의 유기적 연계 미흡

- 장애인 정책은 4대분야^{*}를 중심으로 3차계획부터 세부계획이 확충·보완되어 수립되고 있으나

* ① 복지(건강)분야 ②교육·문화·체육분야 ③경제분야 ④사회참여 분야

- 부처별 정책이 나열되어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업 체계 및 현장과의 소통 채널에 대한 보완 필요

* (예) 장애인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는 이동성 개선 정책 병행 추진 필요

□ 계획수립·평가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 참여 미흡

- 제4차 계획 수립 및 처음 시행한 중간평가 과정에서 연구용역을 담당한 연구진을 중심으로 장애인 단체의 의견수렴 기회를 가졌으나
- 장애인 단체 및 당사자의 직접 참여기회를 보장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장애계의 문제제기

□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임의변경으로 추진실적에 대한 신뢰도 저하

- 3차 계획과 달리 세부계획별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연차별 추진실적을 관리하도록 하여 목표달성을 위한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하였으나
 - 정부부처 사업담당자에 의한 성과지표 임의변경으로 중간평가시 세부사업 성과달성도에 대한 장애계 문제제기

분야별 한계 및 문제점

○ 복지 · 건강 분야

- 개인별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체계 및 발달 장애인의 복지 욕구를 반영한 활동지원 서비스 부족
- 건강문제도 재활치료 중심으로만 대응하고 있어 만성질환·장애 관리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 미흡

○ 교육 · 문화 분야

- 특수교육 인프라 및 예술·체육 지원이 늘어났으나, 다양성 및 접근성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
- 특수학교는 지역주민 반대 등으로 설립이 어려워 특수교사 증원, 소규모·전문 특수학교 및 통합교육 내실화 등에 대한 요구 지속

○ 소득 · 경제 분야

- 장애연금 급여액과 대상자는 확대되었으나, 장애수당 등 타 소득 보장급여가 정체 상태에 있어 다층적 소득보장제도로 발전에 한계
-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강화 등 양적 확대 외에 중증장애인 고용, 장애인 고용유지 등 질적 개선 필요

○ 권익 · 안전 분야

- 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중장기 대책이 부재, 재난 대비 안전교육 및 인프라도 미흡한 실정

○ 사회참여 분야

- 장애인-비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 수준 격차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저상버스 및 여객시설 등 이동 편의 개선도 미흡

IV. 제5차 계획 기본방향

1 추진 방향

-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비장애인과 격차 없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장애인정책 추진
-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Inclusive Society)’를 비전으로 사회 전 영역을 망라하는 5대 분야, 22개 중점과제, 70개 세부과제 추진
 - ①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 갈 수 있는 기본적 여건 조성을 위해 복지서비스와 건강 지원 제도를 확충
 - ② 장애인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 근로능력 상실 등을 고려한 일자리 지원 및 현금급여 등 소득 보장 확대
 - ③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교육, 문화, 체육 등의 활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지원 체계를 마련
 - ④ 장애인의 적극적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사회적 차별인식을 개선하고, 편의증진 · 이동권 등 접근권 확대를 지원
- ‘장애인의 자립생활’이라는 정책 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해 각 분야별로 비장애인과의 격차를 최소화하는 성과목표를 제시
- 장애인정책의 기획 · 집행 · 평가 등 전 과정에 장애계의 적극적 참여를 보장
- 실무추진단에 장애계 참여를 보장하고, 장애계의 제안 과제 적극 수용
 - 장애인의 탈시설 실현,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개선 등 장애계 요구 사항을 추진과제에 적극 반영
- 주요 장애인 정책 분야별로 장애계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 · 운영
 - * 장애등급제 폐지, 탈시설 · 자립, 부양의무제 폐지(복지부), 교통수단(국토부), 최저임금 적용 폐지 등 고용(고용부)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삶의 격차 완화

복지·건강 지원체계 개편

1. 장애인 권리보장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
2. 탈시설 및 주거지원 강화
3. 활동지원 내실화 등 복지서비스 확대
4. 재활의료 전달체계 구축 및 접근성 강화
5. 장애인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기반 마련

교육·문화·체육 기회보장

1. 장애 영유아 보육·교육 지원 강화
2.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 위한 특수교육 기반 강화
3. 진로 및 평생교육 지원 강화
4. 문화·예술 활동 및 관광·여가 향수 기회 보장
5. 장애인 체육·스포츠 향유 기회 보장

경제적 자립기반 강화

1. 장애인 소득보장 급여 개편
2. 소득보장과 고용지원서비스 연계 강화
3. 고용서비스 및 직업재활 지원 강화
4. 장애인중소벤처기업 지원

5대 분야
22개 중점과제
70개 세부과제

권익 및 안전 강화

1.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
2. 재난·안전 지원시스템 강화
3. 발달장애인 서비스 지원 강화
4. 여성장애인 지원 강화

사회참여 활성화

1. 장애인 정보 접근성 강화
2. 장애인 이동권 보장 강화
3. 편의증진·의사소통 지원 강화
4. 장애인 정책 국제협력 강화



● 지역사회 삶이 가능도록 복지, 건강 서비스 지원체계 개편



● 교육, 문화, 체육 협평성 제고를 위한 지원 체계 강화



● 장애인도 더불어 잘 살기 위한 경제자립기반 강화



● 다중적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의 권리 보장



● 동등한 사회참여를 위한 기반 구축



V. 분야별 추진과제

전략1 지역사회 삶이 가능토록 복지·건강 서비스 지원체계 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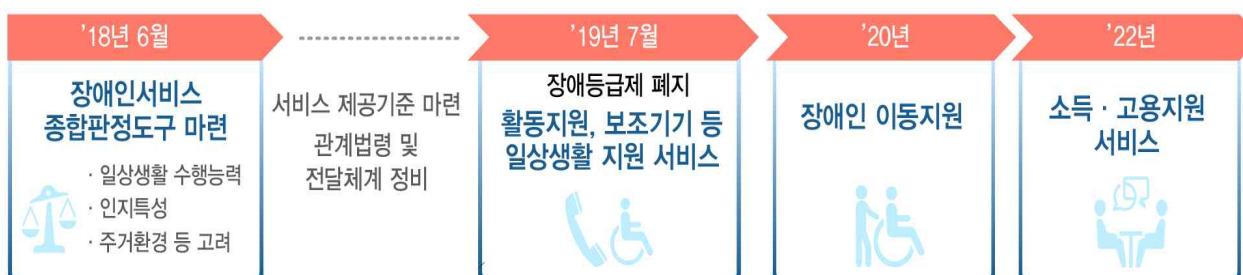
1-1. 장애인 권리보장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

현황 및 문제점

- 장애인서비스가 의학적 장애등급에 따라 획일적으로 제공됨에 따라 “장애등급제” 폐지 필요성 지속 제기
- 장애인의 물리적·인지적 한계에 따른 사각지대를 줄이고 장애인의 서비스접근성 제고를 위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필요
 - * 장애등록 후 서비스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65.4% (2014장애인실태조사)
- 장애유형 확대 등 현행 장애판정기준에 대한 개선 요구 증대

① 장애등급제 폐지 및 맞춤형 종합지원체계 구축

-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생활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 욕구·환경 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해 획일적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종합판정도구 단계적 도입
 - (1단계) 장애인 체감도 및 예산규모가 큰 활동지원서비스 등 일상생활지원 분야에 우선 도입('19.7월)
 - (2·3단계) 이동지원('20년), 소득·고용지원 서비스('22년)로 확대



-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서비스를 쉽게 알고 신청할 수 있도록 장애인 맞춤형 전달체계 구축
 - (찾아가는 상담 강화) 학대,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놓여있는 장애인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하여 공공·민간서비스 연계
 - * 읍면동에서 독거 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 등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 확대
 - (전문적 사례관리) 읍면동에서 욕구 해결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해 장애인복지관 등 민간전문기관과 협력*, 전문적 사례관리 실시
 - * 시군구에 장애인단체, 민간전문기관 등 참여하는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 설치

②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 장애인복지가 시혜가 아닌 권리로 확보될 수 있도록 서비스 확충, 전달체계 개편, 권리옹호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내용에 맞춰,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개별 서비스법 등 장애인 관련법 체계 정비 병행 검토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18~'19년), 장애계, 전문가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제정안 마련('20~'21년)

③ 장애판정제도 개선

- 이의신청, 민원 제기가 많은 장애유형의 인정질환 확대 및 판정기준 완화
 - (장애등록 인정질환 확대) 장애인정 범위가 협소한 정신장애의 인정질환 확대* 및 안면장애에 인정질환(백반증) 추가 검토
 - * 기질성 정신 및 행동장애, 뚜렷장애 등 추가
 - (판정기준 완화) 타 장애에 비해 장애등록 신청 시 탈락율이 높거나 기준이 엄격한 장애(예: 안면, 시각, 자폐 장애 등) 인정기준 완화 추진

1-2. 탈시설 및 주거지원 강화

현황 및 문제점

- 거주시설의 장애인은 자기결정권이 없이 거주를 강요당하며 인권 침해, 학대 등에 노출되어 있어 지역사회로의 거주전환 필요성 제기
 - * 국가인권위 조사결과('12) 시설 거주자 중 약 57%가 시설밖에서 거주·생활 희망
- 소규모시설(30인이하)이 증가하고 대규모 시설(100인 이상)이 감소 하였으나,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 수는 크게 변하지 않음
 - * (100인이상시설) '12. 85개→'16. 53개, (30인이하시설) '12. 209개→'16. 301개
 - * (거주시설이용인) '12. 26,442명→'16. 26,461명
- 탈시설 이후 지역사회 정착 지원 제도, 주거 등 인프라 부족으로 자립생활 정착이 미미하고, 일부는 적응 실패로 시설로 복귀
 - * (서울시 탈시설지원) 2015년까지 탈시설 장애인 총 158명중 22명 시설 복귀(13.9%)

① 시설 거주 장애인의 자립생활 전환 지원체계 마련

- 지역사회 중심 복지체계 구축을 위해 탈시설 자립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
- * 탈시설 개념 정립, 탈시설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탈시설 지원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의무 명시 등
- 탈시설 지원 전담* 및 기존 복지서비스(장애연금 지급, 활동보조인력 지원 등) 와의 맞춤형 연계서비스를 제공하는 ‘탈시설지원센터’ 설치
 - * 시설 거주 장애인 대상 탈시설 육구조사 지원 등
 - 중앙('19) 시도별 지역센터('20~) 단계적으로 설치하여 유기적 지원체계 유지
- ‘19년부터 매년 공공임대주택을 탈시설 장애인에게 제공, 자립생활 초기 필요한 비품, 생활필수품 마련 등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지원
 - * ’18년 대구시립희망원 내 장애인거주시설 ‘시민마을’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택제공 및 자립정착금 지급 등 탈시설 지원 우선 시행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 확대 추진('18년 62개소→'22년 90개소)
 - * '18년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252개소 중 62개소에만 국비 지원

② 새로운 거주서비스 유형 개발

- 거주시설 이용 자격을 서비스 욕구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이용 적격성 심사 기준 마련* 및 심사체계 구축('19)

* 개인 및 장애특성, 지역사회 지원체계 등을 포함한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적격성 심사도구를 마련, 서비스 이용에 대한 심사 평가 검토

- 장애인 거주 시설 서비스의 다양화

- 아파트형 등 일반주택에 그룹홈(체험홈) 다수를 설치하는 등 그룹홈 (체험홈)의 확대를 통해 대규모 시설내 거주인원 감축을 추진

- 소규모 거주시설 인력기준을 마련(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하고 정원 축소 유도, 기능보강 지원 등으로 거주시설의 소그룹 시설 전환 추진

③ 재가 장애인에 대한 주택지원 강화

-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 주거약자용 주택의 입주자 선정시 장애등급도 고려*하도록 하여 중증 장애인 가구에 우선 공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현재 국민·영구·행복주택 공급률량의 8%(비수도권은 5%)를 주거약자에게 공급하되, 경쟁시 부양가족수, 해당지역 거주기간 고려

- 주거급여 지원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기준임대료를 지속 상향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

* 지원대상 : (현재) 중위소득 43% 이하('16) → (개선) 45%이상으로 확대
기준임대료 : (현재) 실제 임차료 83% 수준('16) → (개선) 단계적으로 현실화

1-3. 활동지원 내실화 등 복지서비스 확대

현황 및 문제점

-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욕구 다양화, 돌봄 수요 증가 등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급여량 확대 및 서비스 다양화 필요
- 최저임금 현실화에 따른 서비스 단가 및 본인부담금 조정 필요
- 장애아동의 기능향상 및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아 가족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돌봄 등 장애아동가족지원서비스 확대
 - * 지원인원('17) : (발달재활) 45,012명, (양육지원) 3,300명
-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품목 확대 및 저소득층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및 전달체계 확충 필요

①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확대 및 내실화

- 저소득층 본인부담은 낮추고 고소득층 본인부담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정되도록 이용자 소득과 급여량에 비례하는 본인부담 체계 마련('19)
- 활동보조인 연계에 애로를 호소하는 일부 이용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 허용 방안 검토('18~)
- 상시 돌봄 체계 강화를 위해 야간 자세 변경 및 신변 처리 등이 필요한 독거 와상장애인 등 대상 야간순회서비스 확대 시행 추진('20~)
 - * 이용자 수 : ('18) 5개 시·도 80명 → ('22) 18개 시·도 500명(매년 5년 간 100명 씩 신규 추가)
- 최저임금을 고려한 서비스 단가 상향 조정 및 사후 관리 내실화('18~)

② 장애아동 가족지원 서비스 확대

-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대기수요 해소를 위해 지원인원 확대 (연간 700명) 및 서비스 지원액 연간 2만원씩 단계적 확대*
- * 최대 22만원 → 최대 30만원('19~)

- 장애아 가족 돌봄 서비스 지원 강화를 위해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서비스 지원인원(연간 500명) 및 돌봄서비스 지원시간 단계적 확대*(‘18~)
 - * 돌봄서비스 지원시간 : 480시간(‘17)→528시간(‘18)→600시간(‘19)
 - 소득기준 초과로 서비스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장애인 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부담 이용 방안 마련(‘18~)

③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확대

- 장애인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장애인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 확대(‘18~)
 - 의료적 필요성이 높은 품목을 발굴하여 급여 적용을 확대하고, 품목에 대한 기능상 유형 분류를 통해 급여 지급 세분화
 - * 수동휠체어 기능별, 유형별 세분화(틸트, 리클라인, 일반형 및 활동형)
 - 보조기기 실사용 여건을 반영하여 사용연한 조정 및 급여기준액 현실화
 - * 시각장애인 보장구(‘19), 의지보조기(‘20)
- 저소득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사업 확대(‘18)
 -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지원기준액 현실화 및 일상생활 지원 품목 단계적 확대(‘18년 28개 → ‘22년 42개 품목)
 - 보조기기 수리, 사례관리 등 사후관리 서비스 강화를 위해 지역 보조기기센터 미설치 7개 시·도에 센터 설치 확대(~‘22)

④ 로봇을 활용한 장애인 돌봄 서비스 도입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돌봄* 로봇 개발 및 제품화(‘19~‘23)
 - * 이동, 배변, 이송, 목욕, 식사, 수면 및 돌봄모니터링 등 일상의 어려움 해결
- 활동지원 등 공적 급여에 돌봄 로봇 시범 적용 검토(‘21~)
 - * 최중증 와상장애인의 호흡, 심박, 체온 등 상태 변화의 실시간 감지 등

1-4. 재활의료 전달체계 구축 및 접근성 강화

현황 및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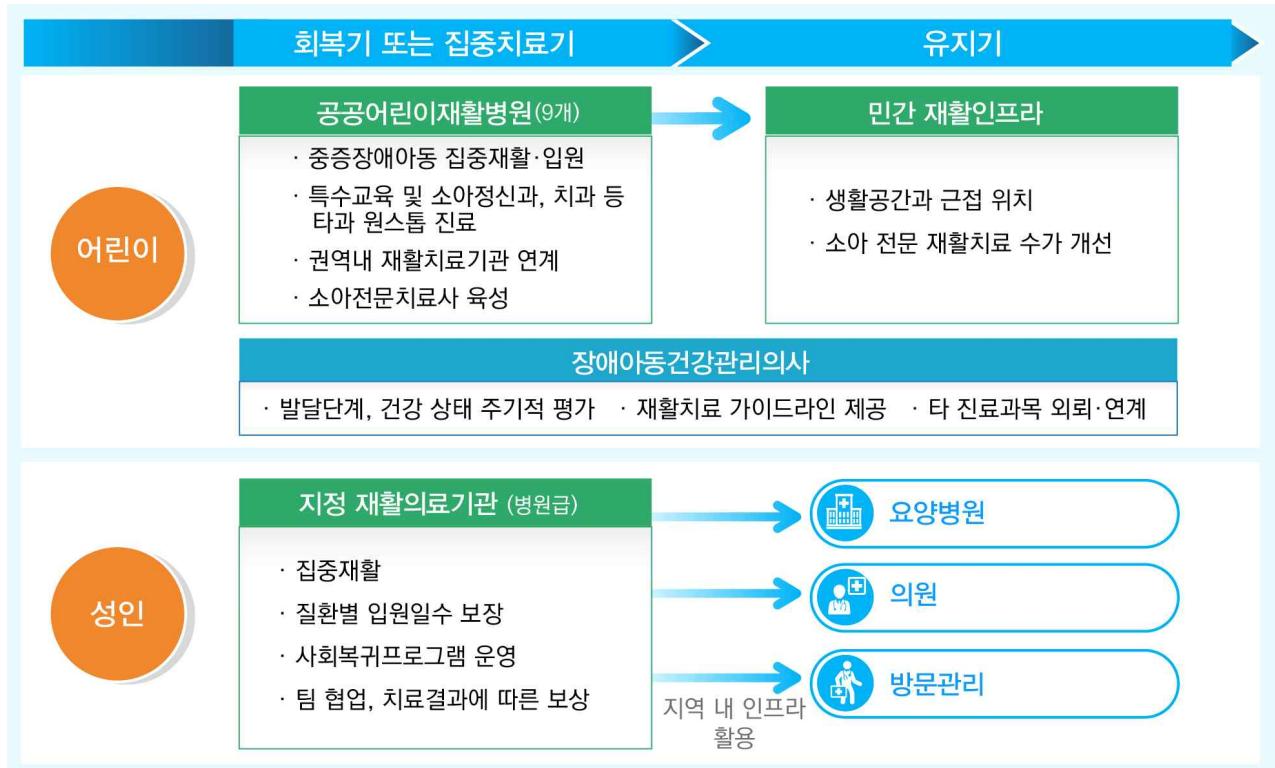
- 어린이 재활치료 전문기관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등 공급 부족으로 치료기관을 전전하는 '재활난민' 등 발생, 재활치료 인프라 확대 요구 증대
-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재활 수요는 증가하나, 기능회복시기에 시기적절한 재활치료를 통한 조기 사회복귀 체계는 미흡

① 어린이 재활의료 체계 구축

- 현재 공급이 부족한 중증장애아동의 집중재활치료를 확대하기 위해 권역별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건립 및 운영 지원('18~)
 - 병원 건립시 특수학교 건립이 연계되도록 하여 장애아동의 치료와 교육이 병행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 장애아동에 적합한 정기적 평가 및 교육상담 서비스 제공하는 '장애 아동 건강주치의(장애아동 전강관리의사)' 서비스 도입('19. 시범사업)
- 경증 장애아동 및 장애 청소년이 가까운 곳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재활 치료 수가 개선을 통한 민간 소아재활 인프라 확충

② 재활의료 전달체계 개편

- 회복기 재활인프라 확충을 위해 수술·처치 후 기능회복 시기에 집중 재활치료 및 조기 사회복귀를 목표로 하는 재활의료기관 지정
 - 적정 입원기간 보장, 전문재활팀에 의한 맞춤형 재활치료, 집중재활 치료가 가능한 적정 수가, 치료성과에 따른 차등 인센티브 부여
- * 시범사업 중('17.10~'18.12월, 15개소)으로 이후 본 사업 예정('19~), 향후 10년간 15~25천 병상 규모, 점진적 지정 확대
- 회복기 집중재활 이후 보존적 치료 및 기능유지를 위한 재활 여건 개선을 위해 요양병원, 의원, 지역사회 재활서비스 등의 역할을 검토



③ 권역재활병원 확충

- 현재 6개소인 권역재활병원을 단계적으로 9개소까지 확대 설치*하고 권역재활병원을 통한 공공재활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

* '20년 경북, '21년 충남 및 전남 권역재활병원 개소

④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를 위한 재활치료 지원 확대

- 진료와 연계한 양질의 맞춤형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방보훈병원** 내 재활센터 연차적 확충

* (1단계) 광주 및 부산 센터 확충('18~'20년)

** (2단계) 대전 및 대구 센터 확충('20~'22년)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심리재활서비스 제공

- 보훈관서 배치 심리재활상담사가 대상자 발굴, 기초 검사·상담 등 심리재활프로그램 실시

* '18년 하반기 6개 보훈관서 시범 운영



1-5. 장애인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기반 마련

현황 및 문제점

- 장애인은 적절한 조기 진료 및 예방적 건강관리의 어려움으로 건강상태 열악, 의료비 지출이 크며 증가율도 더 높음
 - * '11. 70%→'14. 77.2%, 1인당 평균 1.8개의 만성질환 보유(비장애인 유병률 34.9%)
 - * '14년 장애인 진료비 총액은 10.6조원(건보+의료급여) 5년간('10~'14) 증가율 (30.9%vs24.7%), 1인당 연간 439만원으로 전체국민 평균(125만원)의 3.5배,
- 의료서비스 접근성 문제로 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률*이 낮고, 중증장애인은 그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남
 - * ('16년 기준 일반검진 수검률) 장애인 67.3%, 비장애인 77.7%

① 장애인 건강관리의사(장애인 건강 주치의) 도입을 통한 건강관리 서비스 강화

- 지역사회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중증장애인의 만성질환 관리, 주장애 관리 서비스 제공하는 장애인 건강 주치의제 도입
 - '18년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 * 연간 관리계획 수립, 주기적 교육·상담, 전문과목 진료 의뢰·연계 등 서비스 제공
 - * 만성질환 관리 : 영양, 생활습관, 합병증 예방 관리 등
주장애 관리 : 경직 관리, 신경인성 방광·장 관리, 통증 관리, 절단지 관리 등
 - 시범사업, 연구 등을 통해 주치의제와 연계한 장애인 방문진료 모형 개발



② 장애인건강검진기관 지정을 통한 건강검진 접근성 강화

- 장애인건강검진에 필요한 장비, 시설, 보조인력 등을 갖춘 기관을 '장애인 검진기관'으로 지정 운영('18. 10개소 → '22. 100개소까지 확대 추진)
 - * 지정기준 : 장애인의 편의를 고려한 시설 갖출 것, 수어통역 가능한 보조인력을 둘 것 등
 - * 지정된 검진기관에는 장비비, 장애인안전편의관리비 등 인센티브 제공
-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건강검진 항목 개발을 위한 연구 추진

③ 지역사회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지원체계 구축

- 중앙 및 시도별 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설치하여 지역별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지원 · 교육 · 연구, 진료 · 재활치료 등 수행('18~)
 - (중앙) 지역전달체계 총괄·지원, 건강보건통계, 연구, 건강정보 제공 등
 - (지역) 주치의, 보건소 등 건강관리사업 조정·지원, 검진·재활·진료 등 거점병원 역할 수행,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지원, 의료종사자 교육 등
 - * 19개소, 시도별 1개소(서울 · 경기 2개소)
 - (보건소) 현재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을 장애인건강사업을 포함하여 확대 운영

2-1. 장애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지원 강화

현황 및 문제점

- 장애영유아 보육 및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
- 영유아 시기부터 장애 조기발견 및 특수교육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관계부처 연계 등 조기발견 체계 강화 필요

① 장애영유아 보육 지원 강화

- 장애아전문어린이집 및 장애아통합어린이집 확충
 - 장애아전문어린이집 및 장애아통합어린이집* 확충, 시설·기능 보강 지원
 - * ('18)1,124개소 → ('22)1,184개소(매년 12개소씩 5년간 60개소 신설)
- 장애아전문어린이집 및 장애아통합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지원 확대

②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및 교육지원 강화

-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체계 구축
 -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및 교육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 사업*과 연계하여 특수교육 홍보 강화
 - * 장애등록 및 영유아 검진 장애 유소견자에 대한 특수교육 안내, 표준모자보건 수첩 등에 특수교육 관련 정보 제공 등
- 특수교육대상자 교육지원 강화
 - 유아단계부터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해 전일제 통합형태의 통합유치원 및 유치원 특수학급 확대
 - * 통합유치원: ('17)1개→('22)17개, 유치원 특수학급: ('17)731학급→('22)1,131학급
 - 영유아의 발달단계 및 장애특성을 고려한 교수·학습 자료 개발·보급

2-2.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특수교육 기반 강화

현황 및 문제점

-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이 67%에 불과하고, 지역주민 반대 등으로 신규 특수학교 설립이 쉽지 않은 상황
- '17년 현재 70%가 넘는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 배치되어 있으나, 통합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내실화 필요

① 특수교육기관 확충 및 환경 개선

- 특수학교(급) 확충을 통한 교육 기회 확대
 - 지역별 수요를 고려하여 '22년까지 특수학교(총22교) 및 특수학급(총 1,250학급) 신·증설
 - * (특수학교) 174교('17.)→196교('22.), (특수학급) 10,325학급('17.)→11,575학급('22.)
 - 특수학교 설립 형태를 다양화*하고, 인근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체육관·도서관 등 복합공간을 포함하는 등 상생하는 학교 설립 확대
 - * 소규모 특수학교, 특화된 분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특수학교, 대학(교) 및 병원 내 특수학교 등
 -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특수학교 우수사례 발굴·보급, 특수학교 설립 관련 연구결과 홍보 등 대국민 장애인식 개선 및 소통 확대
 - 학교용지의 확보를 쉽게 하고 도시계획 수립시 특수학교 설립이 우선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법·규정* 개선
 -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특수학교를 포함하도록 개정
 -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의 학교결정기준

② 특수교육 교원 증원 및 전문성 제고

- 관계부처(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간 긴밀한 협력 체제 구축을 통한 특수교사 및 통합교육 지원교사(순회교사) 연차적 증원 추진
- 특수교육 교원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교육과정 운영 및 장애특성별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확대

③ 통합교육 지원 내실화

- 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 교사(순회교사) 배치 확대
- 시각·청각장애 등 장애특성에 맞는 통합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장애유형별 거점지원센터를 42개소에서 50개소로 확대 및 운영 내실화
- 일반학교 관리자와 통합학급 담당교원의 특수교육 관련 연수 확대 등 일반학교 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2-3. 장애인 진로 및 고등·평생교육 지원 강화

현황 및 문제점

- 장애학생의 고등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특별전형 등으로 입학하는 학생들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가 다양화
- 전체 장애인의 약 60%(140만명)가 중졸 이하로 교육기회를 놓친 장애인 등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 강화 필요

① 장애청소년을 위한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 진로탐색 활동 및 미래 진로설계 지원 강화를 위해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전면시행 및 자유학년제 확대*

*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운영: ('18) 48교 → ('22) 139교

- 원스톱 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한 지역단위 협의체 구축 등 교육·복지·고용 협업시스템* 구축

* 관계부처간 장애학생의 직업평가·직업교육·고용지원·사후관리 서비스를 일원화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업재활센터 중심으로 협의체 구성('19) 5개 → ('22) 17개)

- 특수학교(중등과정 이상)에 전문자격을 갖춘 진로전담교사 배치를 위한 「진로교육법 시행령」 개정 및 진로전담교사 배치 확대

*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배치: ('20) 40교 → ('22) 184교

②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내실화

-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 장애학생 지원 업무 담당자 연수 및 정보 공유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장애학생지원센터 전문성 강화
- 대학 구성원(교수, 직원 및 학생)의 장애인식 개선교육 의무 실시

- 장애대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해 한국수어통역사, 점역사, 속기사 등 전문도우미 배치 확대

* 전문도우미 수: ('17) 140명 → ('22) 200명

③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강화

- 학령기 의무교육 단계에서 교육기회를 놓친 장애인 교육지원 강화

- 장애유형을 고려한 학력인정 맞춤형 교육시스템 개발 및 지원

* ('18) '평생교육 바우처' 활용 지원 및 학력인정 맞춤형 학습시스템 개발 연구 → ('19) 시스템 개발 및 시범 운영 → ('20~) 전국 확대

- 학교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프로그램 지원 확대

* 참여 학생 수: ('18) 1,871명 → ('22) 2,185명

-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확대

* 프로그램 수: ('18) 650개 → ('22) 1,130개

2-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및 관광·여가 향수 기회 보장

현황 및 문제점

- 문화바우처 사업 및 함께누리지원 사업 등의 확대로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확대되었으나, 비장애인의 문화향유정도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
 - * 1년간 장애인의 문화예술행사 관람실태 조사 결과 영화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참여한 적이 없는 경우가 97% 이상으로 나타남(2014 장애인실태조사)
- 문화예술 향유 및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장애인 관객, 장애예술인의 물리적 접근성 문제 개선필요
- 많은 장애인들이 영화관을 찾는 것보다 온라인 VOD로 영화를 관람하나, 배리어프리 온라인 VOD 서비스 제공은 제한적

①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수 기회 확대

- 저소득 장애인 등의 문화 활동 기회 확대를 위해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액 현실화
 - * 지원 금액: ('18) 개인당 연 7만원 → ('21) 개인당 연 10만원
- 발달장애인(만9세~24세)을 위한 찾아가는 장애인 문화예술학교 지원
 - 예술 장르별(클래식, 공연, 무용, 미술, 도예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확대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확대
 - 공연·전시·영상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문화예술활동 지원

②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접근성 제고

- 장애인 관객 및 장애인 예술인의 접근성과 편의시설을 갖춘 장애인예술 전용 극장 마련 추진
 - 전문가 등 의견수렴과 연구용역 거쳐 최적방안 도출, 순차적 추진

- 지역의 기존 문화시설 ·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한 생활문화센터 등에 장애인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편의 시설 권고

③ 장애인 영화 관람 접근권 지원 강화

- 영화관 폐쇄 상영시스템* 시범운영 및 확대 추진

* 폐쇄 상영시스템 : 보조기기(화면·음성 해설)를 통해 시청각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동시관람

- 자막 · 화면해설 등 장애인을 위한 영화 제작 편수 및 상영관 지속 확대
- 영화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의 영화 관람을 위해 디지털케이블 방송의 베리어프리 온라인 VOD 서비스 제공 확대
- 상영관의 장애인 영화관람 편의시설 개선, 장애인영화제 개최 지원

④ 장애인 관광 · 여가 향수권 증진

- 장애인, 노약자, 영 · 유아 가족 등 모든 관광객이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관광지 조성 확대('22년까지 100개소)
* '18년(12개소)→'19년(15개소)→'20년(17개소)→'21년(19개소)→'21년(20개소)
- 청각, 지적, 맹아, 농아 등 특수학교 청소년 체험여행 지원(연간 500여명)

2-5. 장애인 체육 향유 기회 보장

현황 및 문제점

- 재활 후 사회적응 단계에서 생활체육으로의 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 필요
 - * 재활치료 종료 후 사회복귀한 장애인을 위한 재활운동 및 체육 프로그램, 선천성·발달장애인 등을 위한 특성화된 신체활동 프로그램 등
- 공공체육시설의 접근성 개선, 체육장비 지원 등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생활체육 참여율 제고에 한계
 - * '17년 기준 주2~3회 체육 참여율 20.1%
- 중증장애인에 대한 특화된 지원 강화, 일상생활 공간과 체육활동 공간 간의 거리문제 등의 개선 필요

① 재활운동 및 체육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효율화

- 장애인의 신체활동 참여율 향상을 위해 재활치료와 생활체육 중간 단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활운동 및 체육 전달체계 모형 마련
 - * 장애인체육, 재활의료 등 관련 전문가, 장애인단체 등 참여하는 협의체 운영('18)
-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마련, 운영 기관 인증 및 평가 체계 마련, 중증장애인을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19~)

② 시설 조성, 지도자 배치 확대 등 거주지 중심 체육활동 지원 강화

- 장애인국민체육센터를 단계적으로 확충(시도별 1개소, 총 15개소)하고, 센터 내에 장애인체력인증센터*를 운영
 - * 운동측정평가·운동상담 및 처방을 원스톱서비스로 제공, 개인별 맞춤형 운동프로그램 제공
- 기존 공공체육시설 내 장애인편의시설 개보수 지원

-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확대 배치('18. 577명→'22. 1,000명)하여 주거지 인근 복지관 및 소규모 체육시설 및 지역장애인단체에서도 장애인 체육프로그램을 운영
- 장애인 이동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시도 및 시군구장애인체육회에 승합차 구입 지원

③ 재활-복지-교육영역 연계 유형별/대상별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 모든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존 종목별 위주의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에 유형별 및 장애정도 등의 내용 반영
- 장애-비장애인학생의 통합체육 활성화 및 장애청소년 체육교실 확대
 - 통합체육 보급을 위하여 통합체육 교사연수^{*}의 대상을 체육지도자로 확대 및 통합체육 수업 개소 수 확대('18. 75개→'22. 100개)
 - * 대한장애인체육회와 국립특수교육원이 공동 수행
 - 장애청소년 체육교실사업 연계기관을 지역 대학 및 다양한 전문 기관으로 확대하여 모든 시·도에서 실시('18. 2개→'22. 17개)
- 체육 활동에 보다 많은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교실 및 동호회를 활성화('18. 15,000명→'22. 17,000명)
 - 생활체육교실에서 동호회로 전환을 지원하여 장애인이 지속적으로 체육 활동을 누릴 수 있는 체계 마련

3-1. 장애인 소득보장 급여 개편

현황 및 문제점

- '14년 장애인연금 확대로 장애인가구의 빈곤율이 감소하였으나, 비장애인과의 격차는 여전히 존재
 - * 장애인가구 연평균 소득('16.)은 전체가구의 73.5% 수준(3,683만원/5,010만원)
 - * 장애인가구 빈곤율 31.5% / 전체가구 빈곤율 15.9%'(16)
-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은 월평균 16.4만원('14.)이며, 일부 장애유형은 비용 부담이 매우 크나^{*} 추가비용 보전급여^{**}의 수준은 이에 미치지 못 함
 - * 발달장애 67만 원, 중증지체장애 57만 원('17.)
 - *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최대 8만원, 장애수당 최대 4만 원('17.)

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 중증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18년 25만원으로 인상하고, '21년 30만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
 - '19년부터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기초급여액 조정

②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 급여 현실화

-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 급여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장애수당의 단계적 인상 방안 마련('22)
 - * 장애인실태조사를 통해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조사 실시(3년주기)
- 추가비용 보전은 소득수준보다는 장애특성 · 연령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현금급여체계 개선방안 연구 실시

3-2. 소득보장과 고용지원서비스의 연계 강화

현황 및 문제점

- 일자리와 소득에 대한 욕구에 비해 장애인의 일자리 참여는 제한적, 근로능력과 의지가 있는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제공 필요
 - * 장애인 복지서비스 욕구는 소득보장, 의료보장, 고용보장 순('17년 장애인실태조사)
 - * '16년 장애인 경제활동참가율 38%, 중증장애인 20.8%(전체 경제활동 참가율 63.3%)
- 현재 장애인 현금급여가 장애등급에 연계되어 있어 근로능력이 감소되었음에도 소득보장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발생
- 장애인은 근로능력 제약으로 노동시장 참여에 한계가 있어 장애인 자립을 위해서는 고용서비스와의 연계가 필수적
- UN 장애인권리위원회 등은 장애인의 최저임금 보장을 권고하고 있으나, 여전히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제를 유지하는 상황

① 소득보장 대상 선정방안 개선 및 전달체계 구축

-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소득보장급여(장애인연금 등)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한 새로운 수급 기준(기존에는 장애등급을 활용) 마련
 - 근로능력 등을 고려하여 소득보장급여, 고용지원 등을 결정하는 소득·고용 지원 기준 검토 및 시범운영('20~'21)
- 근로능력이 인정되는 중증장애인에게는 고용서비스 지원이 확대 되도록 관련 부처와 연계 강화
 - 직업능력개발원 신설시 중증장애인 적합 업종 연계를 위한 훈련 과정 마련 요청, 근로능력 있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근로상담 연계

② 장애인근로자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고용지원 제도 개편

- 장애인근로자 임금수준 향상 유도 및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 유인 제고를 위해 고용장려금 단가 인상 등 장려금 제도 개편 추진*
 - * ▲장려금 지급기준 임금 하한선 설정 ▲장려금 지급단가의 최저임금·부담금 인상과 연동 등을 내용으로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개선 방안 연구' 중('18.1분기)

- 최저임금 적용제외자의 저임금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기준을 강화*하여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최소화
 - * 같거나 유사한 직종의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 중 가장 낮은 근로능력자(비교 대상 근로자) 작업능력의 90% 미만 → 70% 미만 ('18.1.1.부터 시행)
 - 단계적으로 적정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 자체의 개편을 위한 '민·관 협의체(TF)*' 구성·운영('18.2~)
 - * 정부(고용부·복지부), 장애인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

③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장애인 소득공제 방식 개선

- 근로활동 참여 장애인이 혜택을 받도록 현재 50% 정률 공제인 장애인 수급자의 소득공제방식을 '정액공제 + 초과분 정률공제' 방식으로 개선

3-3. 장애인 고용서비스 및 직업재활 지원 강화

현황 및 문제점

-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이 상승하고 있으나, 미 이행률이 52.1%로 여전히 많은 기관이 의무 고용률에 미달하는 실정
 - * 장애인 고용률: ('13) 2.48% → ('14) 2.54% → ('15) 2.62% → ('16) 2.66%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복지시설의 범주 안에서 생산을 통한 고용창출을 담당하고 있으나 취약한 생산성, 경영역량 부족 등으로 중증장애인 고용확대 및 처우개선 효과가 제한적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매출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이 장애인 고용·처우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한다는 문제 제기
 - * 원부자재 매입 및 외주하청 증가로 외부로 누수 되는 비용 상승, 경영역량 부족으로 인한 생산성 정체 등 문제 발생

①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제고

- 장애인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추진
 - * 장애인구, 장애인 경제활동인구 등을 고려한 향후 적정 의무고용률에 대한 연구 및 사회적 논의를 토대로 '19년 중 법령 개정을 추진
- 사업주의 자발적인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독려를 위해 사업주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화(18.5월 시행)
 - 인식개선 교육 현장안착을 위해 사업장 규모·유형별 인식개선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교육 강사 양성·관리체계 등 인프라 구축

② 장애인 맞춤형 직업훈련 인프라 확대

- 장애인 직업훈련 수요가 가장 많은 수도권 지역에 종합훈련시설인 '경기남부 직업능력개발원' 신설('21년)
- 타 장애유형과 통합 훈련이 어려운 발달장애인 대상 전용 훈련센터를 17개 시·도에 설치*하고, 감각(시·청각) 장애인 훈련센터 확대도 추진

* ('18) 7개소 → ('19) 11개소 → ('20) 14개소 → ('21) 17개소

- 맞춤훈련센터는 사업체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확대하되, 훈련시설 소외지역에도 설치하여 훈련인프라 사각지대 해소

③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체계화 방안 마련

- 장애인의 최저임금 지급 가능한 생산성 등을 담보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형 직업재활시설 모형(가칭, 기업형모델) 및 인센티브 제공 방안 마련('18.~)
- 시범운영(필요시) 및 관련 법규 반영('20.~, 장애인복지법, 지침 등), 중증 장애인고용 확대·전이 등을 촉진할 지원책 개발('21.~, 고용부협업)
 - * 연구용역,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TF 구성·운영을 통한 논의구조 마련
- 자생력 강화를 위한 경영컨설팅 지원 확대(연 30→ 50개소 이상) 및 생산성 확충을 위한 시설 인프라(신·증축, 생산장비 등) 구축 지원('19~)
- 생산성 창출에 한계가 있는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직업훈련, 취업연계 등 중증장애인 보호·교육·훈련 통합지원 기능 강화

④ 장애인근로자 중심으로 우선구매제도 내실화

- 생산시설 매출이 장애인 고용과 처우에 반영되도록 지정제도 개선
 - 생산시설 진입 시 공공성 검증을 강화하고 매출과 고용·임금 간 연계 장치를 마련하는 등 생산시설 지정 기준 및 요건* 정비('18.~)
 - * (예) 복지단체 목적사업 확인, 장애인 직무분석·배치 심사 강화, 수익금 등에 따른 고용인원·급여기준 차등 적용, 수익금의 법인전출 비율 제한 등
 -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기 지정된 생산시설에 대한 사후 감독 강화('18.~)
- 법정 구매비율 상향, 우선구매 대상기관 외연 확대(예; 공공기관→공공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기관 등) 추진('20.~)

3-4. 장애인 중소벤처기업 지원

현황 및 문제점

- 16개 지역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140개 창업보육실 운영하고 있으며, 취업 취약 계층, 중증장애인 전용 특화 프로그램 도입, 운영을 통한 중증장애인 창업지원
- 내수 판로 치중으로 매출증대에 한계, 해외진출기회 제공 등 국내외 판로 확대를 통한 장애인기업 성장 지원

① 장애인 창업 지원

- (창업보육실 운영) 우수 아이템 창업공간 제공, 컨설팅 지원을 통한 장애인 예비 창업자의 창업 촉진 및 창업기업 성장기반 마련
 - * 보육단계를 창업단계, 기술개발 및 상품화 단계, 사업화단계별 지원
- (점포 창업 활성화) 창업 사업화지원^{*}을 통한 점포 창업 활성화
 - * 점포 창업시 필요한 시설비(물품비, 인테리어비 등)를 1천만원 한도 내 지원
- (중증장애인 전용 창업프로그램) 중증장애인 특화프로그램^{*} 도입 운영하여 취업 취약 계층 중증 장애인의 창업 지원
 - * 장애인 스타트업 농장(농업기반 중증장애인 창업교육) 등

② 장애인기업 성장기반 구축 지원

- 기술 기반 장애인기업의 지식재산권 출원, 시제품제작, 국내외인증 획득 등 지원을 통한 내수 판로확대 기반 지원
- 국제전시회 참가, 시장개척단 파견, 온라인쇼핑몰 입점 등 해외진출 기반 지원을 통한 수출 확대
- 장애인기업의 공공구매시장 진출을 통한 판로 활성화를 위해 조달청 MAS^{*} 참여를 위한 컨설팅 및 제품인증획득 지원
 - *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기업을 선정하여 가격협상을 통해 공급 계약을 하고 해당 제품을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 후 수요자가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

4-1.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

현황 및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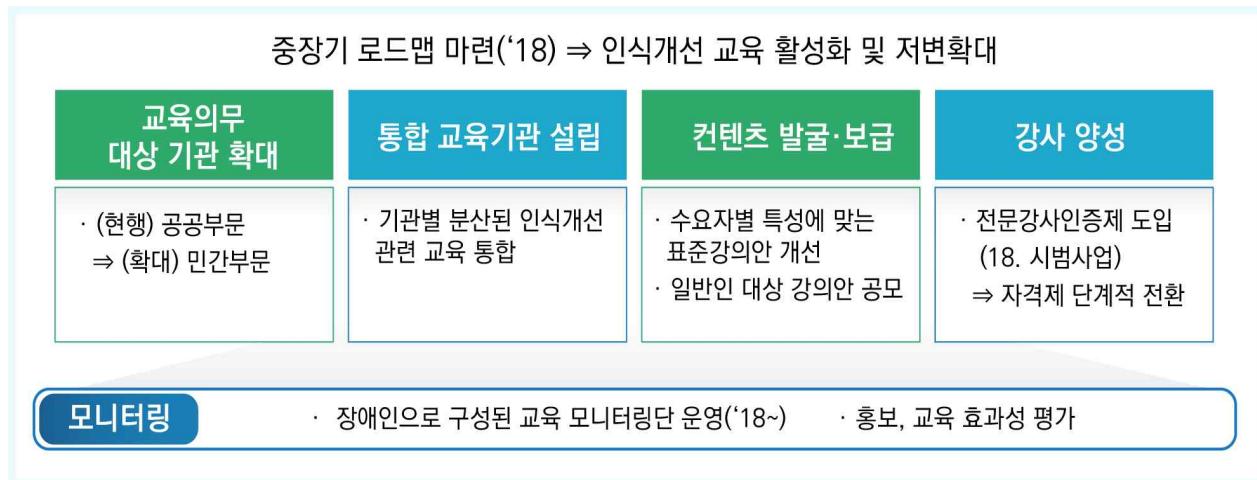
- 특수학교 반대 등 장애인 차별인식이 남아 있고, 장애인학대 사건이 지속 발생하는 등 사회전반의 인식, 학대 예방 등 장애인 권리 보호 강화 필요
- 장애 인식개선 교육 의무대상 기관이 확대(‘16.6월)되었으나, 교육 내용 체계화 및 교육 과정 운영 활성화 필요
- 장애인은 보험가입 배제 등 금융상품 이용에 차별을 당하거나, ATM 이용에 불편을 겪는 등 금융 접근성에 제약 존재

① 장애 인식개선 교육 강화

- 장애인식개선 교육 활성화 및 저변확대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18)
 - 인식개선 지표 개발, 표준교육과정 개발 및 평가, 강사양성시스템 및 교육 모니터링 등 제도화 방안 마련
 - 사회 전반에 장애감수성 확산을 위해 현 공공부문에 국한된 교육 의무대상기관을 민간부문^{*}으로 확대 방안 마련
 - * 장애인차별법금지법 상 모니터링 기관(문화예술, 관광, 방송 및 정보통신, 고용, 금융, 교통 등) 종사자에 대해 우선 실시
- 현재 기관별로 분산·시행되고 있는 인식 개선 관련 교육을 통합·연계하는 장애인식개선 교육기관 설치
 - * 장애인 관련 공공기관 등에 장애인식개선 교육기관 업무 위탁(법적근거마련)
- 수요자별 특성에 맞도록 표준강의안^{*} 개선 및 일반인 대상 강의안 공모전 등을 통해 양질의 교육컨텐츠 발굴 및 보급
 - * 현재 4종(초등/중·고등/교직원/공공기관) ⇒ 분야별, 연령대별 세분화
 - ** 학습교재 뿐 아니라 동영상, UCC, 영유아용 인형극 등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하고 법 취지에 맞는 인식개선교육 실시하도록 전문강사인증제 도입(18. 시범사업)후 자격제로 단계적 전환
- 교육이행률 제고를 위한 홍보, 교육 효과성 평가를 위해 장애인으로 구성된 교육 모니터링단 운영('18~)

② 장애인 학대 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강화



- 중앙 및 시도 권익옹호기관(17개소)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학대, 차별, 인권침해에 대한 체계적 대응('18~)
 - 학대 피해 신고 접수-현장조사-응급조치-사후관리 등 지원
 -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상담·교육 업무 실시
- 권익옹호기관-공공후견법인-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간 연계를 통해 발달장애인을 위한 범죄 피해 논스톱 권리옹호 체계 구축 운영
- 학대 피해자 쉼터(현재 8개소) 전국 확대 설치

③ 장애인 금융이용 제약 해소

- 장애인의 보험가입 제약 해소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에 장애인 차별 금지규정을 명시하고, 장애인 보험상품* 개발 및 이용 활성화 유도

*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이용자 보험 등

- 장애인이 실제 필요로 하는 보험상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통계 공유 등 협력체계 구축
- 장애인 사용 자동화기기(ATM) 개선
 -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의 사용 불편 해소를 위해 장애인 등 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및 ATM 표준 개정 추진
 - * ATM 아래쪽 공간 확보, 터치스크린 각도 조절, ATM 주변의 계단·턱 제거 등
 - 점외코너*의 장애인 사용가능 ATM 설치 확대
 - * 점외코너의 휠체어 접근가능 ATM 설치비율은 34%(점내코너 83%)
- 자필서명이 불가능한 시각·지체 장애인에게 통장 및 신용카드 대리발급 허용
 - 일상 생활에 필수적인 금융상품에 대하여 대체수단(녹취 및 화상 통화 등)을 통한 발급허용

④ 정신장애인 사회통합 지원

- 지역사회 기반 사례관리 강화를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추가 인력 배치('22년까지 약 15백명), 정신건강 사례관리시스템 구축('18) 추진
 - * 입퇴원관리시스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유관 시스템 연계로 보건·복지 통합 서비스 제공
- 치료 및 사회복귀 과정 등에서 정신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해 절차 보조인, 공공후견인 등 의사결정지원제도 도입('18~)
 - * 절차보조인 : 입원시 의사결정, 투약 등 치료과정에서 환자 입장에 의견 제시
 - * 공공후견인 :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중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 의사결정 및 재산 보호 등 권리 보호
-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독립적인 단기보호 거주지인 중간집 (Half way) 모형개발('18. 시범사업)

4-2. 장애인 재난·안전 지원시스템 강화

현황 및 문제점

- 재난 시 장애인의 피해 가능성이 높지만, 관련 통계 미비, 안전 설비 설치 미흡, 재난안전 교육 기회 부족 등 안전 인프라 미흡
 - * 화재 사상자 중 사망자 비율 : 장애인 43.6%, 비장애인 13.7%('16년 국가화재통계)

① 장애인 재난·안전 지원 정책기반 구축

-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등 법·제도 정비('18~'19)
- 장애 특성을 반영한 재난·안전 통계 구축('18~)
 - * 재해연보·국가화재통계 내 장애의 유형(지체, 시각장애 등 15종) 및 장애수준 반영
- 지자체 대상 재난관리평가에 장애인 안전관리 평가지표 보완('18)
 - *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안전교육·훈련 및 안전시설 개선실적 등 반영('17~)

②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경보·피난·안전 설비 기준 강화

- 시각 및 청각 장애인의 신속한 화재 인식 및 대피를 위해 화재 발생 시 점멸·음성출력 기능이 있는 피난구유도등 설치 의무화('18)
-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10세대 이상의 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에 시각 및 청각 장애인을 위한 경보 및 피난설비 설치 의무화('18)
- 장애인 화장실에서의 비상상황에 대비해 비상벨 설치(바닥에서 0.6~0.9m 사이 및 바닥에서 0.2m 내외(쓰러진 상황에 대비))를 의무화('18)
- 영화관, 공연장 등의 관람석에는 휠체어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손잡이를 바닥에서 0.8미터 이하의 높이로 설치토록 의무화('18)
 - * 관람석의 위치에 따라 앞쪽 또는 측면에 안전손잡이 설치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③ 장애인 재난·안전 교육 및 대응 매뉴얼 개발·보급

- 생활안전, 교통안전, 자연재난안전 등 6대 안전분야의 장애 유형별 안전교육 콘텐츠(커리큘럼, 학습교재 등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 (시각/청각장애) 나레이션(화면해설 등), 자막, 스크립트 파일 제공 등 정보 전달방법을 구분하여 개발
 - (발달장애) 노인, 영유아기의 특성과 유사하며, 쉬운 용어사용 등 내용전달측면을 고려하여 개발
 - (공통) 각 장애특성을 감안하여 공통적인 기본사항 위주의 교육 내용에 대해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효과적인 전달방법으로 개발 추진
- 장애특성에 맞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제작·보급
 - 장애인 안전사고 사망률이 높은 재난·안전사고(13종)의 행동요령을 5개 장애특성*에 맞게 제작
- * 5개유형: 이동, 계단(수직)이동, 의미 의사소통, 음성 의사소통, 시각정보 인식 불가능
- 장애특성을 고려한 재난안전 대응매뉴얼 개발* 및 보급
 - * 장애인 재난대응 실태분석, 거주·이용시설 형태 등을 고려해 장애인, 시설관계자, 활동보조인을 위한 대응매뉴얼 개발

4-3.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지원 강화

현황 및 문제점

- 발달장애인 비중이 계속해서 증가하여(‘09. 6.9%→‘16. 8.7%), 특히 중증장애 비율이 높아(전체 중증장애인의 22.5%)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배려 필요
-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의 특성을 반영한 신규 서비스 창출 및 선택권 보장 등 미흡

①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역할 강화 및 개인별 지원체계 구축

-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서비스 제공기관 발굴 및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을 통해 서비스 연계 노력(‘18~)
- 발달장애인 대상 서비스 제공자에게 발달장애 이해 교육 실시(‘18~)
- 지역내 발달장애인 대상 전문 공적기관으로서의 역할 정립
 - 시·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의 관계 및 센터 고유 기능 재정립

② 발달장애인의 욕구에 기반한 보호·돌봄 체계 강화

- 발달장애인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에 기반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주간활동서비스 법적 근거 마련(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 및 전국 확대(‘19~)
- 현재 전국 2개소인 발달장애인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권역별 확대 설치 추진(‘19~)
 - 센터를 통해 도전적 행동 개입매뉴얼 개발, 부모 교육, 약물 사용 지침, 행동치료전문가 양성 및 관리체계 마련 등 발달장애인 보호 체계 구축
 - 센터-가정-학교-지역사회 발달장애인 유관기관 간의 연계체계를 마련하여 도전적 행동에 대한 예방 및 통합지원서비스 기반 구축

③ 발달장애인 성적 권리 및 가족 지원체계 강화

- 청소년기 발달장애인의 건전한 성의식 함양 및 성인 발달장애인의 성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체계적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확대
- 발달장애인가족지원 관련 사업의 통합을 통한 운영 효율성 제고 및 발달장애인가족의 다양성을 고려한 신규서비스* 개발 보급

* (예시)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비장애형제자매를 위한 적절한 지원서비스 등

④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 협의체 운영

- 각 부처별로 분산된 발달장애인 지원 제도 및 사업의 유사·중복을 지양하고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관계 부처* 정책협의체 상설 운영('18~)
- 정기 회의(분기) 및 담당자간 네트워킹을 통해 사업 정보를 공유하고, 사업 내용의 연계·조정 등 협업 과제 발굴* 및 추진

* (예시) 성인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여가활동을 위해 발달장애인지원센터(복지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교육부), 발달장애인 고용훈련센터(고용부) 간 연계 지원 방안 검토 등

4-4. 여성장애인 지원 강화

현황 및 문제점

- 여성장애인은 남성장애인에 비해 교육수준, 고용률, 소득 등이 낮게 나타나는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있음
 - * 여성장애인 교육수준 무학 21.0%(남성 4.7%), 고용률 19.8%(남성 49.4%)
-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비용 지원 현실화 및 지원 대상 확대 필요
 - * '17년 지원대상 1,824명, 여성장애인 최근 3년('14~'16) 평균 출산인원 2,173명(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
- 모성보호에 대한 전문 의료서비스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의 장애이해부족, 정보 부족 등으로 경제적 정서적 신체적 어려움 경험
- 장애인성폭력피해상담소(23개소), 피해자 보호시설(8개소)이 있으나, 상담종료 후 피해자 보호 및 자립지원체계 부족

① 여성장애인 임신, 출산, 양육 지원 확대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실태조사 등을 통해 실질적 도움이 되는 수준으로 출산비용 지원 현실화 추진('19~)
 - * '17년 현재 지원액 1인당 1백만원
 - 출산비용 지원 대상자 누락 방지를 위한 사업 홍보 강화 및 지원 대상 인원 확대 추진('19~)
- 「장애인건강권법」에 따른 시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통해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에 대한 의료적 지원서비스 제공
 - 임신 여성장애인을 등록하고 센터 내 전담 코디네이터, 전문의 등을 통해 건강, 임신, 출산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및 교육 서비스 제공
 - 지역내 모자보건소, 장애 친화적 산부인과 병의원 등과 협업하여 여성장애인 건강 및 임신·출산 지원을 위한 지역네트워크 운영

②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지원 확대

- 여성장애인의 기초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기회 제공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기관의 단계적 확충(15개 추가, ~'22년)
 - * 생애주기별 맞춤형 상담 및 기초역량교육 제공 및 지역사회 유관기관(고용 센터 등)과 연계 강화를 통해 통합정보 제공

③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강화

- 여성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피해 장애인 보호시설 확충
- 보호시설 퇴소이후 피해여성장애인 자립지원 체계 구축

5-1. 장애인 정보접근성 보장

현황 및 문제점

- 장애인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 국민의 65.4% 수준('16.)으로 격차가 여전히 높은 수준
 - * 장애인의 88%가 PC 또는 모바일 기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용역량은 49.8%, 활용은 64.5%로 정보화 활용 및 역량이 낮음
- 민간부문 웹 접근성은 평균 58.8점으로 장애인의 이용이 어려움
- 장애인방송 편성이 확대되는 등 양적 수준은 높지만, 수어방송 및 음성안내서비스 등의 이용편의 개선 등 추진 필요
 - * 전체 의무사업자(139개사)의 95.7%가 장애인 방송 편성목표를 달성

① 웹 · 모바일 정보접근성 보장

- 웹 · 모바일 앱 등 정보접근성 보장 강화
 - 웹 사이트에 한정된 정보접근성 보장 범위를 모바일 앱, SW, ICT 융합 제품 등으로 확대하고, 표준 제정, 기술개발, 품질인증 등 추진
 - 지능정보기술 기반으로 청각장애인의 수화를 인식하여 음성·문자로 변환해주는 자동 통역서비스 시범사업 추진('18년)
- 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 · 보급
 - 스마트기기 보조장치, 애플리케이션 등 정보통신보조기기 개발 (매년 3개 이상 제품 개발 지원)
 - 장애인의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에 필요한 정보통신보조기기(화면 낭독 S/W, 특수마우스, 영상전화기 등) 구매비용의 80~90% 지원 (매년 4천명 지원)

②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독서환경 구축

- 독서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장애인 독서문화진흥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한 공공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 기반 확충
-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제작 및 활용 확대
 -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대체자료 제작 확대, 시각장애인용 대체자료 제작 사업 확대
 - 대체자료 제작을 위한 디지털파일 납본 및 기증 활성화
 -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을 통한 민간도서관, 대학장애인학생지원센터 등의 대체자료 수집, 관리, 공유 활성화

③ 차별 없는 방송접근 및 이용환경 보장

- 스마트 수어방송 상용화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제고
 - 청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수어방송 시범사업 확대('18) 및 상용화 ('19)
 - 시각장애인을 위한 채널번호, 프로그램명 등 음성안내서비스 제공 추진('20)
- 저소득층 시·청각장애인(10만명)에 대한 방송수신기 보급을 확대하여 '21년까지 100% 보급
 - * '12년 15.5%→ '16년 45.8%→ '18년 68%→ '21년 100%(목표)

5-2. 장애인 이동권 보장 강화

현황 및 문제점

-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저상버스 등을 지속 보급 중이나 수요자 증가, 여건 변화 등 이동권 보장에 한계
- 이동권 확대 요구에 대응하여 기존 제도를 개선하고, 중형저상 버스·휠체어탑승 시외버스 등 교통수단 개발 및 보급 필요

① 교통수단 확대 및 새로운 수단 개발

○ 특별교통수단 제도 개선

- 장애등급제 폐지, 이용자 수요 및 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교통수단 법정 보급기준 개선
 - * 현행 법정 기준 : 1, 2급 장애인 200명당 1대
- 휠체어 비이용자의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일반(임차·바우처 방식) 택시 활용 및 제도화 방안 검토
- 현재 지역별로 상이한 특별교통수단 운영방식(요금·대상·거리 등)에 대한 기준 제시를 위하여 표준조례안 마련('18)

○ 저상버스 보급 및 시외 이동권 확대

- '21년까지 전국 시내버스 저상버스 보급률 42%까지 확충
 - * 목표 달성을 위하여 대폐차 지원 등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
- 좁은길, 굽은 도로가 많은 농어촌과 마을버스 구간 운행에 적합한 중형저상버스 모델 개발 및 보급('19~)
- 장거리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휠체어 장애인이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모델을 개발('19)하여 도입·운행 추진

② 여객시설·보행환경의 이동편의 개선

- '21년까지 여객시설의 이동편의시설 기준 적합 설치율('16년말 기준 67.8%)을 80% 수준으로 향상
 - * ('16년말 기준) 여객시설 67.8%, 보행환경 72.2%
 - 설치율이 양호한 도시철도역사, 철도역사, 공항터미널은 90% 이상 수준으로 안정화 및 유지 관리
 - 여객선터미널, 버스정류장 등 개선이 시급한 여객시설에 대하여 적극적인 시설 개선 추진
- '21년까지 보행환경의 이동편의시설 기준 적합 설치율('16년말 기준 72.2%)을 80% 수준으로 향상
 - * 장애인의 불만족 이동편의시설을 우선적으로 개선 추진
 - 관련 R&D 과제^{*}를 통해 개발된 신기술 등의 보급 적용 방안 검토
 - * 「교통약자 보행지원 시스템 개발 R&D('14.6.~'18.4)」: 장애인 등의 버스승차·교차로 횡단 지원시스템 등

5-3. 편의증진·의사소통 지원 강화

현황 및 문제점

- 주택·건축물·보도·교통수단 등의 설계단계부터 물리적 장애를 제거하는 무장애 환경 조성 정책 강화 필요
- 뇌병변장애인, 발달장애인 등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보완 대체의사소통서비스 등에 대한 지원 필요
 - * 뇌병변장애인의 70%가 언어중복장애 있으나, 보완대체의사소통을 아는 비율은 14%에 불과('22년 뇌병변장애인 육구조사)

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활성화

- 일정규모 이상 민간 건축물의 BF인증 의무화 단계적 확대, 인증 유도를 위한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제공 방안 마련
 - * 장애인 화장실 면적의 건폐율·용적률 산정시 제외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신축 시 BF 인증 의무화 우선 추진('19)
 - 여객자동차터미널 대상 BF 인증 시범사업 확대
- 장애인 편의증진 강화를 위해 BF 인증심사 제도 개선
 -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 개선 내용을 인증심사기준에 반영하여 장애인의 편의증진 도모('18)
 - * 출입구(문) 폭 확대($0.8\rightarrow0.9m$), 장애인화장실 바닥면적 확대($1.4\times1.8\text{미터}\rightarrow1.6\times2.0\text{미터이상}$) 및 비상별 설치, 음성·점멸형태 피난구유도등 설치 등
 - 소규모 건축물 등의 수수료 부담을 낮춰 BF인증 참여 활성화하기 위해 단일 금액인 인증수수료를 건축물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18)

② 유니버설 디자인 환경 조성

- 주택, 건축물, 보도 및 교통수단 등의 물리적 장애 제거와 상호 연계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환경 조성 시범사업 추진('20~'21)
 - * (시범사업) 특정 지역(읍·면·동 이하 최소단위)을 선정, 건축물부터 보도·여객시설·교통수단 등이 종합적으로 연계되는 유니버설디자인 환경 조성

- 목적지까지 건축물, 보도, 여객시설, 교통수단(저상버스 등)에 UD환경이 적용된 최적의 이동경로를 안내하는 규격화된 안내시스템 개발·보급
 - * 길안내(지도) 서비스와 연계하여 UD환경이 적용된 무장애보행경로 및 이동경로에 소재한 건축물 등의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제공(스마트폰 어플 등)
- 도시지역 거주 장애인 가구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매년 1천가구, 가구당 5백만원)을 통한 장애인 주거환경개선 추진('19~)
- 장애인의 문화시설 이용 등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매뉴얼 개발·보급
 - 박물관·체육관 등 장애인의 관람동선을 중심으로 시설내에서 접근성을 개선하는 이동 동선 및 안내체계 개발
 - * 문화시설 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매뉴얼 5종 내외 추가 개발

③ 전동보장구 이동지원 확대

- 장애인 등의 이용이 많은 건축물(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 여객시설 (역사, 터미널 등) 등에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 추진('19)
 - 전동보장구 충전시설을 장애인 편의시설의 종류로 편입하여 대상 시설에 설치 의무화(「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 개정)

④ 장애인 의사소통 보조기기 활용 서비스 지원 강화

- 뇌병변, 지적장애인 등을 위한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AAC) 활용 중재 서비스 전국 확대 추진('18~)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표준모델로 채택('18.)하고 서비스 수요, 효과성 등 검토하여 장애인 바우처 사업화 하는 방안 검토

⑤ 수어통역 통신중계서비스 이용환경 개선

- 이통3사 협의를 통해, 통신중계서비스 이용 비용* 무료화 추진('18)
 - * 전용번호 음성통화/영상통화/문자메시지 + 중계서비스 전용앱 이용 데이터
- 수어통역 중계사 근무환경(정규직 전환, 성희롱 근절대책 마련 등) 개선을 통한 서비스 품질 제고 추진('18~)

5-4. 장애인정책 국제협력 강화

현황 및 문제점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인천전략 등에서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국제협력과 공동 목표달성을 위한 시민사회 참여증진을 촉구

① 인천전략의 완전한 이행

- 인천전략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하반기 로드맵 수립('18.)
 - 인천전략 하반기 로드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연구결과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 목표 제시 및 분야별 핵심전략과제 선정, 과제 추진체계 및 이행지표 개발
- * 한국장애인개발원 시행('18.2~6)
- ** 장애인지예산, 장애영향평가, 장애분리통계 구축, 여성장애인 지원 등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한 이행상황 주기적 점검
- 인천전략기금을 통한 아태지역 저개발국 대상 장애분야 ODA 협력확대
 - 인천전략 주도국으로 역할강화를 위해 ODA 협력수요 적극 발굴
- * 수원국 확대 및 개도국의 장애정책, 제도 구축을 위한 컨설팅 또는 협력사업 발굴

② UN 장애인권리협약 국내이행 강화 모니터링 강화

- UN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에 대한 국가보고서(2,3차 병합보고서) 제출 및 UN장애인권리위원회 심의 대응('19.2)
 - 부처별 이행상황 점검 및 쟁점이슈에 대응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18)
- UN 장애인권리협약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단 운영(국가인권위원회)
- 협약 비준시 서명을 유보한 선택의정서의 유보철회 여부 검토

VI. 추진 체계

1. 추진 체계

- (성과목표) 정책성과 평가시 추진과제별 성과목표의 달성을 함께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 정도 등 결과(Outcome) 측면에서 평가
 - 5대 정책분야별로 장애인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목표 지표 (생활만족도, 빈곤율, 고용률 등)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성과를 평가
 - 과제별 목표, 지표 등 성과목표 변경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거치도록 의무화
- (평가체계)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점검하고 성과 목표 달성을 평가
 - 장애인개발원을 통해 종합계획 실행정도를 매년 모니터링 및 평가하고 해당 부처로 피드백하기 위한 기초자료 생성
 - 종합계획 추진 2차 년도 종료시점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중간 평가를 실시하고 계획 보완
- (소통 · 환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전문위원회 구성 · 운영을 통해 주기적 환류 및 성과관리 체계화
 - 관계부처, 학계, 현장 전문가로 조정위원회 산하 2개의 전문위원회^{*} 구성(주재: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반기별 개최
 - * 1분과: 복지 · 건강 · 권익 분야, 2분과: 교육 · 문화 · 경제 · 사회참여 분야
- (통계개발) 정책 수립 및 평가 지표의 발굴 · 개선을 위해 장애인 관련 부처간 자료 연계를 통한 장애인 분야 통계 생산 및 보완 추진
 - * ‘장애인 건강’ 및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관련 통계의 국가승인통계화, 부처간 자료 연계를 통해 장애인 안전 관련 통계 보완 등 추진

2. 과제별 담당부서

전략1. 지역사회 삶이 가능토록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개편

번호	중점과제	번호	세부 추진과제(안)	담당기관(부서)
1-1	장애인 권리보장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	1-1-1	장애등급제 폐지 및 맞춤형 종합지원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1-1-2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1-1-3	장애인판정제도 개선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1-2	탈시설 및 주거지원 강화	1-2-1	시설 거주 장애인의 자립생활 전환 지원체계 마련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1-2-2	새로운 거주서비스 유형 개발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1-2-3	재가 장애인에 대한 주택지원 강화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1-3	활동지원 내실화 등 복지서비스 확대	1-3-1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확대 및 내실화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1-3-2	장애인 아동 가족지원 서비스 확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1-3-3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장애인자립기반과)
		1-3-4	로봇을 활용한 장애인 돌봄 서비스 도입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장애인서비스과)
1-4	재활의료 전달체계 구축 및 접근성 강화	1-4-1	어린이 재활의료 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보험급여과)
		1-4-2	재활의료 전달체계 개편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1-4-3	권역재활병원 확충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1-4-4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를 위한 재활치료 지원 확대	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
1-5	장애인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기반 마련	1-5-1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도입을 통한 건강관리 서비스 강화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1-5-2	장애인건강검진기관 지정을 통한 건강검진 접근성 강화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1-5-3	지역사회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지원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전략2. 교육·문화·체육 형평성 제고를 위한 지원 체계 강화

번호	중점과제	번호	세부 추진과제(안)	담당기관(부서)
2-1	장애인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지원 강화	2-1-1	장애 영유아 보육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2-1-2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및 교육지원 내실화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2-2	장애인 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특수교육 기반 강화	2-2-1	특수교육 기관 확충 및 환경 개선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2-2-2	특수교육 교원 증원 및 전문성 제고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2-2-3	통합교육 지원 내실화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2-3	장애인 진로 및 고등·평생교육 지원 강화	2-3-1	장애인 청소년을 위한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2-3-2	장애인 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내실화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2-3-3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강화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2-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및 관광·여가 향수 기회 확대	2-4-1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수 기회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인문정신정책과) (예술정책과)
		2-4-2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접근성 제고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문화기반과)
		2-4-3	장애인 영화 관람 접근권 지원 강화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2-4-4	장애인 관광·여가 향수권 증진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2-5	장애인 체육 향유 기회 보장	2-5-1	재활운동 및 체육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효율화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2-5-2	시설조성, 지도자 배치 확대 등 거주지 중심 체육활동 지원 강화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
		2-5-3	재활·복지·교육영역 연계 유형별/대상별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

전략3. 장애인도 더불어 잘 살기 위한 경제자립기반 강화

번호	중점과제	번호	세부 추진과제(안)	담당기관(부서)
3-1	장애인 소득보장 급여 개편	3-1-1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3-1-2	장애인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 급여 현실화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3-2	소득보장과 고용지원서비스의 연계 강화	3-2-1	소득보장 대상 선정방안 개선 및 전달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3-2-2	장애인근로자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고용지원 제도 개편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3-2-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장애인 소득공제 방식 개선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3-3	장애인 고용서비스 및 직업재활 지원 강화	3-3-1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제고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3-3-2	장애인 맞춤형 직업훈련 인프라 확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3-3-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체계화 방안 마련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3-3-4	장애인근로자 중심으로 우선구매제도 내실화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3-4	장애인 중소벤처기업 지원	3-4-1	장애인 창업 지원	중소기업벤처부 (소상공인과장과)
		3-4-2	장애인 기업 성장기반 구축 지원	중소기업벤처부 (소상공인과장과)

전략4. 다중적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의 권리 강화

번호	중점과제	번호	세부 추진과제(안)	담당기관(부서)
4-1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	4-1-1	장애인식개선 교육 강화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4-1-2	장애인 학대 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장애인서비스과)
		4-1-3	장애인 금융이용 제약 해소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과)
		4-1-4	정신장애인 사회통합 지원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4-2	장애인 재난·안전 지원시스템 강화	4-2-1	장애인 재난·안전 지원 정책기반 구축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복구지원과)
		4-2-2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경보·피난·안전 설비 기준 강화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4-2-3	장애인 재난·안전 교육 및 대응 매뉴얼 개발·보급	행정안전부 (안전문화교육과)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4-3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지원 강화	4-3-1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역할 강화 및 개인별 지원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4-3-2	발달장애인의 욕구에 기반한 보호·돌봄 체계 강화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4-3-3	발달장애인 성적 권리 및 가족 지원체계 강화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4-3-4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 협의체 운영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4-4	여성장애인지원 강화	4-4-1	여성장애인 임신, 출산, 양육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장애인서비스과)
		4-4-2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4-4-3	기정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강화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전략5. 동등한 사회참여를 위한 기반 구축

번호	중점과제	번호	세부 추진과제(안)	담당기관(부서)
5-1	장애인 정보접근성 보장	5-1-1	웹 · 모바일 정보접근성 보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활용지원팀)
		5-1-2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 및 보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활용지원팀)
		5-1-3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독서환경 구축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장애인도서관)
		5-1-4	차별 없는 방송접근 및 이용환경 보장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지원팀)
5-2	장애인 이동권 보장 강화	5-2-1	교통수단 확대 및 새로운 수단 개발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5-2-2	여객시설·보행환경의 이동편의 개선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5-3	편의증진 · 의사소통 지원 강화	5-3-1	장애인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활성화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5-3-2	유니버설 디자인 환경 조성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5-3-3	전동보장구 이동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5-3-4	장애인 의사소통 보조기기 활용 서비스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장애인서비스과)
		5-3-5	수어통역 통신중계서비스 이용환경 개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
5-4	장애인정책 국제협력 강화	5-4-1	인천전략의 완전한 이행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5-4-2	UN 장애인권리협약 국내이행 강화 모니터링 강화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